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Social Care in Crisis – the Impact of Austerity in England

캐럴라인 글렌디닝(영국 요크대학 사회정책연구소 명예교수)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린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 들어가며

영국, 특히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과 서비스 공급 수준이 인구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지출은 해마다 삭감돼 왔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기대어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근로 연령대 성인이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영리단체들은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 개인돌봄(personal care) 등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정부의 재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으며, 그나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용 기간이 제한되거나(예, 병원에서 퇴원한 후의 일정 기간)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는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영국(특히 잉글랜드) 정부의 최

* 번역: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근 대응은 단기적이고 위기 대응 중심적이며, 서비스 재정 면에서도 중앙정부가 형평에 맞게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에서 지방정부의 가변적 재원 마련에 기대는 방식으로 옮겨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잉글랜드 사회적 돌봄의 재정과 거버넌스에 대해 약술하고, 사회적 돌봄의 품질과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도입한 몇 가지 혁신적 제도들을 선별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혁신적 시도들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긴축 정책의 영향을 함께 논하는 한편, 광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돌봄: 분절화와 민영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의료·커뮤니티(거주지)케어의 경우 그 재정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은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각각 이양되어 있다. 국가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각 구성국에서 일반세(general taxation)를 재원으로 삼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며, 관련 서비스는 지급 시점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재정과 공급은 각 구성국 지방정부가 책임진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가정에서의 개인돌봄(일상생활의 도움), 주간보호(day care), 식사배달서비스(meals on wheels)가 주를 이룬다.¹⁾ 역사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균등화조정교부금(equalizing grants)에 의존했다. 서비스의 양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내에서도 지역 간 서비스의 접근성, 양, 형태 등이 서로 달랐다.

1990년대 이래 잉글랜드에서는 사회적 돌봄을 위한 준시장(quasi-market)이 발전했다. 1992년에는 민간이 제공하는 재가돌봄 이용 시간(home care contact hours)이 전체의 2%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에는 민간단체들(영리단체와 자선단체)이 서로 경쟁하며 재가돌봄서비스의 97.5%를 제공한다. 전체 재가돌봄서비스의 70%는 지방정부가 구매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이용자가 사비를 들여 구매하고 있다(Age UK, 2018). 따라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지방정부 재

1) 스코틀랜드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다른 세 구성국과는 점점 차별화되고 있다. 재정 상황도 좋을 뿐 아니라 NHS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면밀히 통합되어 있다.

정에 크게 의존한다. 요즘은 지방정부가 서비스 계약을 통으로 하기보다는 제공기관과 맺은 협약의 큰 틀 아래 개별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모든 제공기관은 국가규제기구인 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며, CQC는 정기적인 서비스 품질 검사를 수행한다(www.cqc.org.uk).

개인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자산 조사와 함께 극도로 엄격한 욕구 사정을 거쳐야 한다. 오늘날엔 욕구 수준이 매우 높고 자산·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산 조사에 따라 책정된 서비스 이용 요금(means-tested charges)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가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 가운데 6~25%는 이 모든 서비스를 사비로 구매하고, 20만 명 정도는 (아마도)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개인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가사 서비스는 사비로 이용한다(Baxter & Glendinning, 2014).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2%, 85세 이상 인구의 20%가 어떤 형태로든 가정에서 공식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Age UK, 2018).

3. 2000년 이후 발전 현황

사회적 돌봄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그때마다 긴축 정책에 따른 재정 삭감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 개인화와 개인예산

돌봄에 대한 자기 선택권과 통제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캠페인이 확산되자 지방정부들은 1997년부터 현물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 현금은 주로 가족 외 돌봄 종사자(활동지원종사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활용률이 낮고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Fernández, Kendall, Davey, & Knapp, 2007).

2008년에는 사회적 돌봄을 수급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예산(PB: Personal Budget)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2008). PB란 개인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돌봄 시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별로 할당되는 재정 지원을 일컫는다. PB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되어 개인이 관리

하거나 제3자 대리인이 관리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위탁한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식(노인 대상으로는 가장 흔한 방식), 혹은 이러한 방식들의 혼합 방식으로 지급된다. 2014년에는 PB 예산의 29%만 직접적 현금 지불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거의 절반(47%)이 지방정부가 위탁한 서비스의 비용 지불을 위해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ADASS, 2014).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려던 정책이 그 목표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지방정부들은 전반적인 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어서 사회적 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NAO, 2018).

나. 재활과 사회복귀서비스

2000년부터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단기적·집중적 재가돌봄서비스(*home care reablement services*) - 치료와 장비 포함 - 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 왔다. 일상생활복귀서비스(*reablement*)는 주로 질병을 앓거나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이 다시 일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수 장비나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지원 등을 비롯해 다방면의 생활 적응을 돋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노인이다. 일상생활복귀서비스는 6주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 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지원에 따른 욕구 사정이 이뤄진다. 일상생활복귀서비스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Glendinning et al., 2010) 전달 방식이 성과를 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Rabiee & Glendinning, 2011).

4. 2010년 이후의 긴축 정책

2010년부터 영국 정부는 혹독한 긴축 정책을 펴 왔으며,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도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 공급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2010-2011 회계연도와 2014-2015 회계연도 사이에 성인 돌봄(*adult care*) 예산에서 46억 파운드(약 6조 5300억원)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2010~2011 회계연도 순계예산(*net budget*)의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ADASS, 2015). 같은 기간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 수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다(Age UK, 2014).

2015년 5월 또 한 번의 지출 삭감 계획이 발표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2015~2016 회계연도의 돌봄서비스를 직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만 11억 파운드

(약 1조 5600억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ADASS, 2015). 전체적으로 영국의 지방교부금은 이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7%가 삭감(Age UK, 2015)된 데 이어 2015~2016 회계연도와 2019~2020 회계연도 사이에 56%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욕구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간의 간극은 2019년까지 28억 파운드(약 3조 9700억 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영국의 성인 돌봄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9% (Franklin, 2015)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요양(long-term care) 지출액 평균은 GDP의 1.6%이다(Humphries, Thorlby, Holder, Hall, & Charles, 2016).

점점 불거져 가는 예산 위기에 대응해 지방정부들은 지역 주민의 재산세를 기준율에서 연간 2~3%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중 일부를 사회적 돌봄 예산에 할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Nuffield Trust, 2015). 나아가 예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잉글랜드 지역 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돌봄 예산의 균형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한편 병원 입원을 줄이거나 퇴원을 앞당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NHS 예산이 긴급자금 지원 형태로 지방정부에 배분되기도 했다.

끝으로 근로유지수당(in-work income maintenance benefits)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적최저임금[국가 생활임금(NLW: National Living Wage)] 인상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돌봄 종사자들은 가장 큰 저임금 근로자 그룹 중 하나이기 때문에 NLW 인상은 돌봄 제공자들의 임금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5. 긴축 정책의 영향

전문가들, 분석가들, 논평가들은 모두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동의한다(CQC, 2016; Age UK, 2017; NAO, 2018). 또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면 그만큼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퇴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의 위기는 NHS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 서비스 접근성

2009-2010 회계연도와 2013-2014 회계연도 사이 재정 삭감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은 노인 인구는 전체의 26%에 불과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였다. 사람들이 주거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2009-2010 회계연도에서 2013-2014 회계연도 사이에 재가돌봄 지출액은 19%가 줄어들었고 서비스 수혜자 수는 30%가 감소하였다 (Humphreys et al., 2016). 오늘날 재가돌봄서비스는 시설에 수용될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Mortimer & Green, 2015). 같은 기간 식사배달서비스 지출액은 47%, 서비스 수혜자 수는 61%가 감소했다. 주간보호 지출액은 30%가 줄어들어 해당 보호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수는 9만 5145명에서 5만 9300명으로 약 3분의 1이 감소했다. 돌봄 장비와 가정용 보조구 등을 지급받는 사람도 8만 3945명이 줄어들었다(Mortimer & Green, 2015).

나. 미충족 욕구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의 28%가 일상 활동에 도움(개인돌봄)이 필요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실제 도움을 받은 노인은 절반(12%)에 미치지 못했다(NAO, 2018). 2017년 65세 이상 인구 약 120만 명이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2016년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다. 오늘날 잉글랜드에서 개인돌봄 욕구를 충족하지 못 한 채 살아가는 노인은 8명 중 1명꼴이다(Age UK, 2017).

다. 가족 보호자

가족이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영국 전역에 걸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가족 돌봄자 수가 11% 증가했다(Carers UK, 2014). 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자의 48%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85%는 돌봄 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75%는 돌봄 일이 자신들의 미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Carers UK, 2015).

라. 긴축 정책의 영향: 지역 돌봄 시장

예산 부족과 더불어 국가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새로운 비용 압력이 돌봄 제공 단체들의 사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서비스 요금을 동결했으며, 요금을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개인예산(Personal Budget) 금액 삭감 역시 지역 돌봄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켰다. 재가돌봄 제공 단체들을 대표하는 한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이 책정한 재가돌봄 요금 평균은 시간당 고작 16.12파운드(약 2만 2800원)로, 추산된 최저비용보다 시간당 2파운드나 낮다(UKHCA, 2018). 또 재가돌봄 방문 시간이 매우 짧은(15분) 경우가 많아졌다. 재가돌봄 종사자들은 대부분 가정과 가정 간 이동에 대한 경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보다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민간 구매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2016년 전반기 중 지방정부의 3분의 2 정도는 재가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보고했으며, 2017년에는 지방정부의 절반가량이 재가돌봄서비스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했다(ADASS, 2017).

국가생활임금이 인상되고 2012년 이래 성인들의 사회적 돌봄 일자리가 3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제공기관들이 인력을 고용, 유지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간호직 공실률은 9%이며 정규직 직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임시직, 위탁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55% 증가했다(Brindle, 2015). 일반적인 돌봄 일에는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70%는 돌봄 제공기관들의 인건비에 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하지 않는다(House of Commons, 2017).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와 외국인 채용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 직원 고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영된 탓인 듯 잉글랜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질은 대체로 취약하다. 서비스품질위원회는 2015-2016 회계연도에 조사한 서비스의 28%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CQC, 2017). 2017년에는 지방정부의 80% 이상이 지역 재가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ADASS, 2017).

6. 나가며

영국의 사회적 돌봄, 특히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2010년 이래 급속히 악화되어 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지난 정부들은 계속해서 지방교부금, 특히 성인 돌봄 예산을 줄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지역 돌봄 시장의 존립과 역량에 대한 위협은 분명해졌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 보상액이 현실에 미치지 못해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는 데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공기관들이 직원을 고용·훈련·보유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 간다. 브렉시트 이후에 단행될 이민자 고용 제한 정책은 돌봄 종사자 고용, 서비스 공급 역량과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존립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자 NHS, 특히 급성기 병원 부문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적절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CQC, 2016). 사회적 돌봄 재원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가변적이고 불공평한 법인 및 재산세(지방세)로 바뀌는 것은 사회적 돌봄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서비스 개념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와 노령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권이라는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지난 영국 정부들은 사회적 돌봄 재정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장황한 보고서들과 제안서들은 현실화되지 못했다(Wenzel, Bennett, Botttery, Murray, & Sahib, 2018). 2018년 영국의회의 두 특별위원회가 만든 공동보고서는 사회적 돌봄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돌봄도 의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달 시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장기적 열망을 앞으로의 재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House of Commons, 2018). 한편 심각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돌봄 재정의 완전한 몰락은 면할 수 있었다. 사회적 돌봄 재정에 대한 또 하나의 자문보고서가 2019년 초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개혁에 대한 결정은 브렉시트(Brexit) 위기가 해결되고 난 후 또다시 다음 선거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참고문헌

- ADASS. (2014). National Personalisation Survey 2014. National Overview Report, <http://www.adass.org.uk/PersonalisationSurvey2014> downloaded 8 June 2015.
- ADASS. (2015). Budget Survey 2015. <http://www.adass.org.uk/budget-survey-2015> downloaded 8 June 2015.
- ADASS. (2017). Autumn Short Survey of Directors of Adult Services 2017. www.adass.org.uk/media/6118/autumn-short-survey-2017-report-october-2017.pdf downloaded 30 October 2017.
- Age UK. (2014). Older people with care needs not getting crucial help. <http://www.ageuk.org.uk/latest-press/archive/older-people-care-needs-not-getting-help/> downloaded 8 June 2015.
- Age UK. (2015). Consultation Response Spending Review 2015. London AgeUK, www.ageuk.org.uk/professionals/policy, downloaded 15 November 2015.
- Age UK. (2017). Social Care Parliamentary Briefing December, https://www.ageuk.org.uk/globalassets/age-uk/documents/reports-and-publications/reports-and-briefings/care--support/rb_dec17_social_care.pdf downloaded 30 October 2018.
- Age UK. (2018). Behind the headlines: the battle to get care at home, <https://www.ageuk.org.uk> downloaded 30 October 2018.
- Baxter, K., & Glendinning, C. (2014). People who fund their own social care: A scoping review. SSCR 2619, NIHR School for Social Care Research, SPRU, University of York.
- Brindle, D. (2015). The outlook for social care is grim – unless more workers are recruited. The Guardian 18, November 2015,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5/nov/18/social-care-workers-increased-demand-unpaid-care>
- Carers UK. (2014). Facts about Carers: Policy Briefing, London Carers UK.
- Carers UK. (2015). Carers Call for More Support. <http://www.carersuk.org/news-and-campaigns/press-releases/carers-call-for-more-support-as-new-figures-reveal-worrying-impact-of-caring> downloaded 8 June 2015.
- CQC. (2016). The State of Health Care and Adult Social Care in England 2015/16, London: Care Quality Commission. www.cqc.org downloaded 15 October 2016.
- CQC. (2017). The State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England 2016/17. www.cqc.org.uk downloaded 9 January 2018.
- Department of Health. (2008). Transforming Social Care. Local Authority Circular Letter, 2008(1): Gateway ref: 9337, London, Department of Health.
- Fernández, J. L., Kendall, J., Davey, V., & Knapp, M. (2007). Direct payments in England: factors linked to variations in local provis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6, 97–122.
- Franklin, B. (2015). The End of Formal Adult Social Care Funding: A provocation by the ILC-UK. London: Centre for Later Life Funding.
- Glendinning, C., Jones K., Baxter K., Arksey, H., Rabiee, P., Forder, J....Wilde, A. (2010). Home Care Re-Ablement Services: Investigating the Longer-Term Impacts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Social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York, York.
- House of Commons. (2017). Adult Social Care,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Committee Ninth Report of Session 2016–17, HC 1103, London: TSO.
- Humphries, R., Thorlby, R., Holder, H., Hall, P., & Charles, A. (2016). Home Truths. Social Care for Older People. Kings Fund and Nuffield Trust.
- Mortimer, J., & Green, M. (2015). Briefing: The Health and Care of Older People in England 2015. London, Age UK.
- NAO. (2018). Adult Social Care at a Glance, London, National Audit Office.
- Nuffield Trust. (2015). The Spending Review: what does it me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www.nuffieldtrust.org.uk/publications downloaded 8 December 2015.
- Rabiee, P., & Glendinning, C. (2011). Organisation and delivery of home care reablement – what makes a differenc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9(5), 495–503.
- UKHCA. (2018). The Home Care Deficit <https://www.ukhca.co.uk/news.aspx> downloaded 30 October 2018.
- Wenzel, L., Bennett, L., Bottery, S., Murray, R., & Sahib, B. (2018). Approaches to Social Care Funding. Social care funding options, London, Kings Fund and Health Foundation.